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바다의 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제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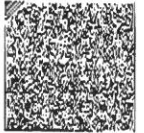
1. 불개항장에 기항하려는 외국적 선박은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및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273호, 2015.8.19, 일부개정)에 의거, 사전에 불개항장 기항허가(허가 처리기간 5일)를 받은 후에 불개항장에 입출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불개항장 : 개항(무역항 및 수역시설)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면(부산남항, 수영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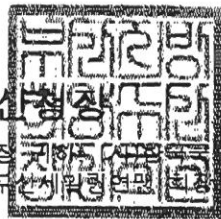
2. 외국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및 요트협회 등에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높아, 불입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해운통제 조치로 북한기항 180일 이내 외국선박 및 북한의 편의치적선박,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선박은 불개항장 기항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273호(2015.8.19, 일부개정)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한국선주협회 회장 귀하, (주)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귀하, 대한운대리점협회 회장 귀하, 한국해운조합 부산시부장 귀하,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부산세무청 연명 회장 귀하

주무관 박선미 행정사무관 김용환 과장 전결 2016. 12. 2. 최국일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23469 (2016. 12. 2.) 접수

우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좌전동 1116-1) / <http://www.portbusan.go.kr>

전화번호 051-609-6313 팩스번호 051-609-6319 / pusan2008@korea.kr / 대국민 공개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전문개정 2009.12.29.]

선박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시행 2015.8.19] [해양수산부훈령 제273호, 2015.8.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개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역항을 말한다.
4. "불개항장"이란 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한다.
5. "기항"이란 선박이 국제법상 무해통항이 아닌 특정복식 수행을 위하여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운반·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세법령에 따라 소관업무에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대상)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개항장에서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부터 또는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를 하고자 하는 선박
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불개항장에서 개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제반역무를 제공받으려 하거나 그 밖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항하고자 하는 선박

②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이나 외국원수 및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3. 개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선박으로서 개항을 통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 또는 역무를 제공받으려 하는 선박
4.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5.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을 용선한 외국선박

제5조(허가신청) 불개항장에 기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불개항장의 기항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은 해당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불개항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6조(기항허가서의 교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기항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불개항장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의 안전 확보 가능, 해양오염방지 여부 및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기간의 연장 등) ① 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기타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3호, 2015.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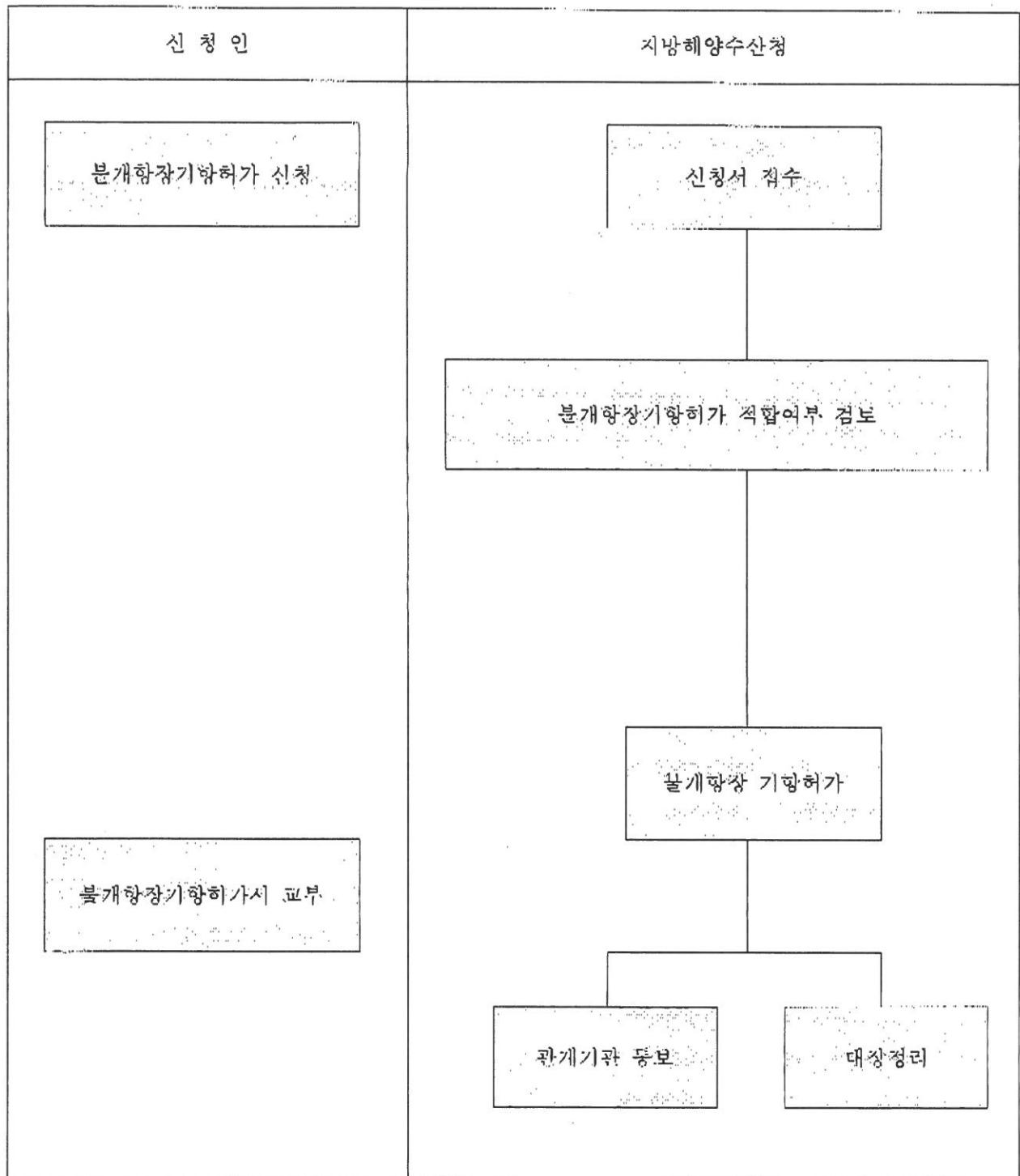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번호(NO.)	불 개 항 장 기 항 허 가 서 PERMISSION OF CALLING AT NON-OPEN PORT				
선박명세 Description of the Vessel	선 명 Name of Vessel		총톤수 G/T		직제톤수 D.W.T
	호출부호 Call Sign		국 적 Nationality		용 도 Type
	선박소유자 (1) Name & Address of Owner				
	선박운영자 (2) Name & Address of Operator				
	대 리 점 (3) Name Address of Agent				
기항목적(Purpose of Call)					
기항지명 Port of Call					
허가기간 Duration of Call					
허가조건 Condition for Permission		"이면기재" "Written on next page"			
<p>선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개항장 기항을 허가함 Permission is granted for the above VESSEL to call at NON-OPEN PORT on condition that described above.</p> <p style="text-align: center;">20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Administration</p> <p style="text-align: right;">(인)</p>					

210mm x 297mm
(고준용지(1종) 120g/m²)

불개항장기항허가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

플게항장 기항허가 검토 보고서(제7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1. 선박제원

선명	충분수	용도	국적	소유자	관리운영자	대리자

○선원편파

국적	인원수					계

○화물 적재량

품명	수량				계

○여객 승선현황

국적	인원수					계

2. 기항지명(주소) :

3. 기항목적

4. 기항 예정일시

구분	신청 예정일시	조정(변경) 일시	비고
입항	()일간	()일간	
출항			

5. 허가 신청자 및 허가 신청일시

○허가 신청자 :

○허가 신청일시 :

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6.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1) 기항목적의 타당성 여부		
▪인근 개항에 기항할 수 없는 사유의 타당성		
▪기타 검토사항		
(2) 밀수, 밀반출, 밀항, 밀입국 등 방지대책		
▪관계기관 등에 통보 여부		
▪밀수품, 밀항자 등 입항전 선상 자체 점검 시행 여부		
▪기타 검토사항		
(3) 안전대책		
▪불개항장 수심 등 입출항 가능 여부		
▪국적증서 소지 여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해당 국제협약증서 및 최소승무원 정원 충족 여부		
▪선사, 대리점 및 구조기관 등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기타 검토사항		
(4) 해양오염방지대책		
▪선상유류오염비상계획서 수립 여부		
▪오염방지설비의 정상 작동 선상 자체 점검 여부		
▪오염 발생 시 방제기관 등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기타 검토사항		
(5) 기 타		
▪		
▪		

7. 허가조건

8. 기타 참고사항

검 토 자 소 속 : 직명(급) 성명 (인)